

## 정보 및 전자통신하의 신용장거래에서 "Original Document"의 판단기준

한상현\*

### 요 약

무역거래에서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내용은 전자문서교환으로 즉시 전달될 수 있으나 문서의 원본은 그렇지 못한 설정이므로 각종 전파나 전자매체로 전달되어오는 문서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P 500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장거래에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은행의 인정 및 판단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실무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본 서류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I. 서론

독립추상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r abstraction)을 근거로 한 신용장(L/C)거래에서 최근에는 단순히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원본(original)이 아닌 서류사본으로 은행이나 매수인의 돈을 사취하는 사기 사건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이 악용되게 된 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역량의 증가와 전자통신수단 및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제도의 도입으로 원본이 아닌 사본이 원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역거래에서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서류

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내용은 전자문서교환으로 즉시 전달될 수 있으나 문서의 원본은 그렇지 못한 설정이다. 그러므로 각종 전파나 전자매체로 전달되어오는 문서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기간동안 ICC 은행위원회에도 신용장거래에서 어떠한 서류들이 원본서류이며 그러한 서류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은행들의 문의와 질문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어 왔다.<sup>1)</sup> 이에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sup>2)</sup>에서는 복사, 자동화

1) James E. Byern, The Original documents controversy : from Glencore to the ICC decis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and George Mason University, 1999, pp.1-2.

2) 이는 신용장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1920年に 설립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 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UCP)으로, 1933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현재(UCP 500)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UCP 500은 전 세계에서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물론 실무거래에 종사하는 은행들에게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원칙과 명

\* 강남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겸임교수

및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서류들은 원본으로 취급하며 또 사본은 서명이 없어도 수리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은행은 “사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하며 원본과의 구별 및 권리·소유에 관한 유권해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중요성과 구성을 개괄적으로 고찰한 다음, UCP 500의 규정을 근거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은행의 인정 및 판단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실무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본서류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중요성과 구분

### 2.1 신용장거래의 특성과 서류의 중요성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수출업자에 대한 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으로서<sup>3)</sup>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이다.<sup>4)</sup>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백화 해석기준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新堀聰, 貿易政策と貿易賣買, 同文館, 1996, p.271~272)있으며, 전세계 약 160개국이 이를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3) Ralph H. Fols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a problem-oriented coursebook~, second ed., West Publishing Co, 1991, p.40;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1985, Paris, p.6.

4) 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f the resent revision to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물품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sup>5)</sup> 물품이 운송서류에 의해서 표창되고 이러한 권리증권이 무역거래의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서류거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비록 신용장이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에 근거를 두더라도 일단 발행된 신용장은 그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가 되며 관계당사자들은 서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은행의 지급의무는 제시된 서류에 의해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물품이 계약과 일치여부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분쟁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sup>6)</sup>

신용장결제방식으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sup>7)</sup> 여기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의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국제표준은행업무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거하여 문면상(on their face)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거래 중에서 수출입업자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라 할 수 있다.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1997, Vol.101, p.177.

5) UCP 500 Article 4(Documents V. Goods/Services/Performance).

6) A. G. Guest, The Common Law Library Number 2, Benjamin's Sale of Goods, Fifth edition, London, Sweet & Maxwell, 1992, p.149.

7)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74, p.71.

## 2.2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구성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각 서류마다 복통수(複通數)로 구성되는데, 대개의 경우 신용장에 그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통수가 명시된다. 그러나 신용장에 명시가 없을 때에는 3통이 1조가 되는 선하증권을 제외하고는 통상 각 2통이 정본(正本)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2.3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구분

### 2.3.1 기본서류와 기타서류

신용장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에서 서류는 우선 기본서류와 기타서류로 구분된다. 기본서류는 어느 무역거래의 경우에나 꼭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을 말한다. 기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로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을 말한다.

유의할 점은 신용장에 기본서류가 아닌 기타서류로서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명기하여 요구하고 있을 때에도 그 기타서류는 성격상 수출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서류가 되므로 반드시 이를 준비·제시하여야 한다.

### 2.3.2 원본과 사본

신용장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요구하고 있

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통수, 그리고 기재내용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가 원본인가 사본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UCP 500<sup>8)</sup>에서는 운송서류나 보험서류 등과 같이 관련기관에서 작성한 핵심서류를 제외한 기타의 서류는 신용장에서 여러 통을 요구할 경우 1매의 원본에 나머지는 사본으로 충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는 서류 자체에 원본 즉 "Original"이라는 표시와 함께 발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데, 서명은 육필, 천공, 스템프, 기계 및 전자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복사한 서류도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sup>10)</sup> 그런데 관련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는 서류상에 "Original" 또는 "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고 서명이 된 것은 원본이며, "Non-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고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은 사본이므로 양자의 구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이 명문으로 인증된(authenticated, validated, legalized, visaed, certified.....)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되는 서류상에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명, 표식, 날인 또는 부전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sup>11)</sup>

8) UCP 500, Article 20 (C).

9) 본 규정은 발행은행의 담보권 확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에서 비록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서류의 각론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본이 인정되는 서류는 신용장의 기본서류중 수의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인 환어음과 상업송장으로 국한됨으로 발행은행의 담보권행사에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UCP 500, Article 20 (b).

11) UCP 500, Article 20 (d).

### III.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 장거래에서 서류의 적격성 과 사본서류의 문제

#### 3.1 신용장거래에서 정보 및 전자 매체서류의 정규성

신용장은 서류거래이므로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익자가 제시한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에 따라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서류는 일정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과는 별도로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그 서류 자체의 다음과 같은 정규성(正規性, regularity)을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 신용장조건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유효성(validity)과 적법성(regality)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서류는 현재의 관습에서 사용 중인 형태이어야 한다. 셋째, 서류 특히, 운송서류는 제시기한이 경과된(stale) 것이 아니어야 하며, 통상의 제시 기일을 경과한 경우에 그 서류는 부정규성을 가지게 된다.

#### 3.2 정보 및 전자매체에 대한 은행 의 서류수리 적격성

##### 3.2.1. 서류의 일치성

서류의 일치성이란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각각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

제출통수, 조건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일치성에 위배되는 서류(discrepant documents)”는 수리를 거절한다.

그런데 일치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그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환어음이나 상업송장 등 서류의 작성자가 수출업자 자신인 경우에는 “엄밀 일치(strict compliance)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장의 표기사항과 제시서류의 표기사항의 일치정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철자 하나, 점 한 개까지라도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면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제3자가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서류인 운송서류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은 “실질일치(substantial compliance)의 원칙” 혹은 “상당일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제시된 서류의 표기와 신용장의 표기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의 불일치(discrepancy)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요건에 명백히 어긋나지만 않으면 비록 동일하지 않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

엄밀 일치의 원칙은 주로 금융후진국의 일부 은행들에서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신용장거래관행이 미정착한 중국의 일부은행들은 UCP 500하에서 은행의 지급책임을 회피하거나 외환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이 중국의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수입되는 제품의 값을 억지로 인하하기 위하여 엄밀일치를 내세워 무시해도 좋은 불일치를 들추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sup>12)</sup> 전통적인 예는 “US\$”와 “USD”, “Telephones”와 “telephones”, 수하인란에 “ABC/DEF”와 “ABC\DEF”,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To the order of”와 “To order of”, “Hong Kong”와

12)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UCP 500 Problems in China Trade, 1996, 6, p.2

"Hongkong" 등이다. 이는 신용장은 은행의 條件附支給確約이기 때문에<sup>13)</sup> 은행으로서는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지급을 이행한다<sup>14)</sup>는 신용장의 본질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 의한 조건부 "대금지급구조"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은행과 발행의뢰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용장의 "대금거절구조"로 변질된다.<sup>15)</sup>

한편,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 및 상품의 명세와 제시된 서류에 나타나는 명세들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UCP 500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국제표준은행업무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sup>16)</sup>

### 3.2.2 상호모순된 서류

신용장거래에서 제출되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지만, 서류상호간에는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모순성만 없으면 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sup>17)</sup>

이 모순성의 문제는 주로 제출되는 서류상에 신용장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 각 서류의 인쇄된 양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을 기재하는 도중 작성자의 실수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적어 넣어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상에 공통적으로 하인(shipping marks)을 기재하는 난을 두고 있는데 이 표시가 서로 상이한 경우 및 규격 표시가 kg, ton, lb 등 서류마다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서류작성자는 불가결

한 사항이 아닌 한, 이렇게 기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일단 기재한 사항은 다른 서류의 동일항목과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3.2.3 위조된 서류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를 심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할 뿐 아니라 신용장거래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및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 관련서류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는 한 이를 믿고 그대로 수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나 위낙 정교하여 그 진위를 식별하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하고 위조에 대한 짐증이 갈 때는 그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위조로 판명되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여야 한다.

## 3.3 신용장거래에서 사본서류의 문제

신용장거래의 본질적 특성은 모든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라는 아킬레스건(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오직 서류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엉터리 물품을 선적하고도 서류만 완벽하게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대금지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sup>18)</sup>

13) Katherine A. Barski, op. cit., p.177.

14) Discount Records Ltd. V. Barclays Bank Ltd.[1975] 1 Lloyd's Rep.166.

15)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op. cit., p.3.

16)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89, p.60.

17) 南豐祐, 貿易決濟論, 圖書出版 斗南, 2000, p.446.

따라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허위나 위조된 운송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편취하거나<sup>19)</sup>과 물품을 선적했지만 선적기일 등을 어길 경우 기일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B/L을 만들어 은행에 제시하거나<sup>20)</sup> 혹은 계약조건과 상이한 불량물품을 선적<sup>21)</sup> 및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non-shipment of the goods) 사기<sup>22)</sup>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이러한 사기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금액도 거대화되는 경향에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술과 사무복사기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사기의 방법이나 수단도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기거래에 개입되는 관련자들의 관계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sup>23)</sup>

그런데 최근에는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서류사본으로 은행이나 매수인의 돈을 사취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sup>24)</sup> 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이 악용되게 된 데에는 최근의 무역환경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역량의 증가

18)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74, p.71.

19) Merchants Corp. of America v. Chase Manhattan Bank 事件(1968) 5 UCC Rep. Serv. 196.

20) Marine Midland Grace Trust Co. V. Banco del Pais, 261 F. Supp. 884 [1966];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409 F. 2d 711[1969]; United Bank Ltd. V. Cambridge Sporting Goods Corp., 360 N. E. 2d 943. [1976].

21) 桐谷芳和, 四項 貿易取引と信用状, 經濟法學研究會, 1994, pp.112-121.

22) Hindley & Co. V. East Indian Produce Ltd Co. [1973] 2 Lloyd's Rep. 515.

23) 南豊祐・韓祥鉉, 信用狀方式의 國際商品去來에서 詐欺豫防策, 韓國商品學會, 商品學研究, 第19號, 1998, 12, pp.255-256.

24) 박대위, 선적서류사본에 의한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대한상사증재원, 중재, 1999, pp.167-169.

와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제도의 도입으로 원본이 아닌 사본이 원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EDI제도는 우선 EDI로 보내오는 서류가 제3자가 아닌 정당한 서류발급자가 보내오는 것인가를 확인해야하고 또 그것이 진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원거리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공간을 전자·전파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오는 문서들을 그대로 신뢰하여 수리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본서류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매우 혼란했으나, 정보통신기술 및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른 최근의 무역거래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최근의 신용장통일규칙<sup>25)</sup>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전문(電文)사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판시(判示)<sup>26)</sup>가 있다.

## IV.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장거래에서 “Original Document”的 판단기준

### 4.1 UCP 400에서의 “Original Document”的 판단기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거래는 양적인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통신과 운송 그리고 정보처리분야에도 기술적 진

25) UCP 500 Article 20 b) 및 c)

26) 1980. 1. 15. 대법 제2부판결 78다 1015 손해배상

보가 크게 이룩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에 의사전달의 통신수단으로 주로 이용하여 왔던 우편이나 전신을 대신하여 Telex나 Fax가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Telefax, 전자메일(E-Mail), 그리고 전자데이터교환(EDI)과 같은 통신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무역거래에 있어 물품인도나 대금지급이 주로 수작업에 의해 작성된 종이에 의한 서류에 의해 이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서류처리업무를 컴퓨터에 의해 단순·신속·정확하게 자동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수속간소화로 서류작성의 기술이 진보하고 여러 종류의 방법에 의해 서류가 작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신용장거래에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UCP 400(1983년 개정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제22조 C항을 새로이 신설하였다.<sup>27)</sup>

본 항은 그 대상이 되는 서류를 ①복사기기에 의해 작성된 것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②자동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하여 또는 그 결과로서 작성된 것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③카본카피로서 작성된 것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서류의 골격부분이 인쇄되어 있는 용지에 기재내용만을 복사기기에 의해 기입한 것 또는 모든 기재내용도 기입되어 있는 원고의 전체를 복사한 것 양자를 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기타의 방법에 의한 서류에 관해서도 이전의 규정과 동일하다. ②은 자동기기나 컴퓨터기기의 결과로서 작성된 서류란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등이 그 기구 내에서 어구를 합성시켜 자료를 분석, 계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 것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③은 예로부터 상용되어 왔던 카본지에 의해印

자되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 1〉 UCP 400과 UCP 500의 규정내용비교

| 조문번호                   | 규정의 개요   | 개정사항  |
|------------------------|--|---|
| 제20조-b<br>〈구<br>제22-b〉 | (복사기기 등에 의한 서류)<br>전단에서 복사기기, 자동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한 서류 및 carbon copy의 서류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원본으로서의 표시가 되어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리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후단은 서명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가를 예시하고 있다. | · 전단은 "authenticated"의 낱말이 "signed"로 바뀐 것 이외에는 변경이 없음.<br>· 후단은 신설된 규정임 |
| 제20조-c<br>〈신설〉         | (서류의 사본)<br>i. 어떠한 서류가 copy로서 수리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br>ii. 신용장이 "duplicate", "two fold", "two copies"처럼 복수로 구성된 서류(multiple document)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 신설된 규정임   |
| 제20조-d<br>〈신설〉         | (서류의 증명, 인증 등)<br>신용장조건으로서 서류가 authenticate된 것, validate된 것, legalize된 것, visa된 것, certify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 조건은 어떻게 하면 충족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 · 신설된 규정임   |

#### 4.2 UCP 500에서 "Original Document"의 판단기준

은행으로서는 만일 사본이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한, 서류가 원본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서류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법들로 인하여 원본과 사본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관점에서

27) 朝岡良平 編著, 實務家のために逐條解説 信用状統一規則, 社團法人 金融再訂事情研究會, 1985. pp.235-239.

현행의 UCP 500 20조는 향후 무역업무에 EDI(전자자료교환)거래의 도입을 반영·전망하여 컴퓨터 등으로 작성된 서류의 서명 및 서류의 인증 등에 관하여 탄력적인 규정이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원본과 사본서류에 관한 해석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도입하였다.<sup>29)</sup> 즉, UCP 500 제20조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 전체에 대하여 신용장면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떠한 서류가 수리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규정한 조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4.2.1 원본서류의 인정범위와 서명요건

UCP 500 20조 b항에는 원본서류의 인정범위와 서명요건에 관하여 구 규칙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에서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i) 복사기기(reproductive systems), 자동화기기 또는 컴퓨터기기(automated or computerised systems) ii) 복사지에 의한 복사본(Carbon Copies)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이에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즉, 신용장에서 요구한 경우)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은 원본으로 수리한다.

이때 서류는 수기서명(육필), 모사서명(팩스밀리 서명), 천공서명, 스템프, 기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식 또는 전자식의 인증방법(method of authentication)<sup>30)</sup>에 의하여도 서명될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지 아니한 서류는 사본으로 수리한다.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Original로서의 표시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手書의 서류 및 타이프라이터의 1장 이외의 서류에는 신용장에 달리 명시가 없는 한, Original로서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것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sup>31)</sup>

그러나 서류의 작성방법에는 관계없이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서류의 所持者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서류의 문면상 Original로서의 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류나 법률 절차상 그 표시가 요청되는 서류에는 당연히 Original로서의 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와 같이 그 속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의미를 가지는 서류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상기의 규정에 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음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수리하기 위한 요건속에 “필요한 경우”란 “signed Commercial Invoice”와 같이 신용장이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운송서류나 보험서류에 관하여 UCP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우 및 서류의 성질상 당연히 서명되어야 하는 서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서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명되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서명은 다음의 c항에서 서술하는 방법들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b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서명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명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는 서명자는 자국법률의 제약을 받게 된다. 예

28) Charles del Busto, *The New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for the UCP 500*, ICC, Publishing S.A. Paris, 1993, p.28.

29) 桐谷芳和, 1993年改訂版 信用状統一規則の解説~舊規則との比較つき~, 經濟法令研究會, 1994, p.36.

30) 인증방법이란 어떠한 방법에 의해 발행자가 확실하게 발행하고 그리고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 표시를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1) 김용복, 신용장론, 박영사, pp.204-205.

를 들면 일본의 운송업자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서명방법은 수기(handwriting)의 서명이거나 또는 “상법 중 서명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명날인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예로 팩시밀리서명은 UCP상은 서명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의 법률상은 단순한 記名으로 이해되며, 거기에 추가하여 날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sup>32)</sup>

이상의 조항은 과거의 UCP에는 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이번 개정된 UCP 500에서 새로이 정의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b항 전단의 원본서류에 관한 규정과 함께 서류에 행하는 서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b항 후단은 무역과 금융의 실무에 EDI 등이 점차로 도입되어 서류가 컴퓨터로 작성되는 것을 예상하여 거기에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보이며, 특히 “서명”에 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 가능한 여러 형태의 무역거래, 법률적 공적인 서명을 포괄할 수 있게 광범위한 규정을 두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 4.2.2 부분의 범위와 복본서류의 요건

UCP 500 20조 c항에는 부분의 범위와 복본서류(multiple documents)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에서는 “신용장에서 “부본(duplicate)”, “제2통(two fold)”, “제2사본(two copies)”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과 같이 복수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을 때에는 서류상에 명백히 원본을 2통 이상의 복본으로 발행된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발행된 통수 모두를 제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2통 이상의 사본

32) 東京銀行システム部, 貿易と信用状, 實業之日本社, 1996. 1. p.130.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본 1통과 나머지는 사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20조 b항에 의거 신용장 거래에서 원본서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표시가 있고 필요시 서명이 되어 있어야 원본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簿本”(copy)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원본이란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서류는 이를 모두 사본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때의 簿本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용장에 2통 이상의 복본서류가 요구된 경우에는, 서류는 1통의 原本과 나머지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된다.

즉, 신용장이 “Bills of Lading in triplicate”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1통의 원본과 2통의 사본을 제시하면 신용장의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 것이 되지만, 선하증권에 원본3통이 발행되어 있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3통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신용장이 “bills of lading in three originals”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3통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sup>33)</sup>

본 c항은 b항 전단에서 어떠한 것이 원본서류로서 수리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떠한 것이 사본으로서 수리되는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음과 같은 의문, 즉 예컨대 신용장이 상업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제시된 상업송장이 원래 원본서류로서 타자 작성되어 육

33)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duplicate”, “triplicate”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서류는 사본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서류면의 “duplicate”, “triplicate”的 표시는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이 세계적으로 정착화되어 있다(東京銀行システム部, 전개서, p.130).

필로 서명된 것이라도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사본이고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견해는 틀린 것이다. b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서류 및 운송서류를 제외하고는 원본의 표시는 필수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c항은 서류의 심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UCP 500에서 새로이 신설된 조항인데,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사본에 대한 의미, 그리고 “2통”, “3통” 등과 같이 여러 통의 서류를 요구한 때 원본관 사본의 통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항에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 4.2.3 인증 등의 인정방식

UCP 500 20조 d항에는 인증(authentication) 등의 인정방식에 대해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증된, 확인된, 공인된, 사증된, 증명된 또는 유사한 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상의 조건은 문면상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서류상의 어떠한 서명, 표식(標識), 스템프 및 부전(附箋·표시)(label)에 의해 충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이 규정에 의하여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에 인증된, 합법화된, 확인된(등) 서류를 요구한다면 문면상 이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서명 등이 있으면 된다. 즉, 신용장에서 commercial invoice legalised by an Arab consulate 라고 요

구한다면 어떠한 아랍국가의 영사가 인증한 상업송장이라도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므로 수리된다. 인증은 b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명, 표시, 부호 등 다양하게 인정된다.

본 조항은 UCP 500에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동안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 간에는 서류의 “인증”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에 서류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서류 거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의 심사자들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장차 국제적으로 통일된 은행표준관습을 형성해 나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 4.3. UCP 500상 정보 및 전자매체에 의한 원본서류의 실무상 판단기준

#### 4.3.1 원본의 증명과 서명의 판단기준

전통적으로 서류는 정보전달기능(Information Function), 입증기능(Documentary Evidence), 권리의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의 3가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데<sup>36)</sup> 이는 서류에 수록된 자료중의 하나인 서명(Signature)에 의해 뒷바침되고 있다.<sup>37)</sup>

그러므로 무역서류상의 서명은 서류를 작성한자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고 서류상의 정보내용을 확인하며, 그 서류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증거의 기능을 한다.<sup>38)</sup> 따라서 특정서류가 진본인지의 확인여

34) ICC Doc. 470/Int. 258.

35) UCP 500 Article 20 (b). 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 condition under a Credit calling for a document to be authenticated, validated, legalised, visaed, certified or indicating a similar requirement, will be satisfied by any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n such document that on its face appears to satisfy the above condition.

36) 日本貿易關聯手續簡素化協會, 署名以外の方法による貿易書類の認證-貿易手續の簡素化, 書式コード等の標準化のための國聯勸告集, 1988, p.90.

37) ECE DOC., 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Interchange, Trade Wp. L/R, 185/Rev. 1, 21 Oct, 1982, p.8

38)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主要貿易書類の署名の考察, JASTPRO, 81-13, 1982, p.8

부는 통상 서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서명된 전통적인 무역서류는 법적으로 진본임이 확인되어 인증(authentication)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서명이 진본확인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서명, 부호 또는 표식의 존재, 서명으로서의 유일성(unique), 서류에의 서명의 첨가 그리고 서류의 내용에 동의하고 진본임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다.<sup>39)</sup> 종래의 서명방식으로는 자필의 기명날인, 서명 또는 자필서명모양의 고무인 등을 이용한 서명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서류의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서류에 서명 등을 하는 이유는 그 서류가 틀림없이 발행권리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행하였음을 인증(authentication), 즉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신용장거래에서 원본에 실서명이 있는 것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도 모두 인증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sup>40)</sup>

첫째, 전통적인 서류작성 방법이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손 등의 육필(by handwriting)로 글씨를 직접 써서 서명하여 만든 서류는 원본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기타 주로 관공서가 발행하는 서류에 많이 사용되는 천공기계를 이용하여 찍은 서명(by perforated signature)이나 발행인의 서명 또는 성명을 도장 또는 고무인으로 새겨서 찍는 방법인 스템프(by stamp) 기타 발행인의 상정표시를 찍거나 붙이는 방법인 "by symbol", 그리고 팩스장치를 이용한 서명방식(by facsimile signature)도 유효한 원본서류로 간주된다.

둘째, 과거의 전통적 서류작성 방법의 하나인

타이프라이터로 찍은 서류는 원본으로 간주된다. 주의할 점은 타이프라이터에 종이를 여러 장 겹쳐게 넣어 사이사이에 카본지를 끼우고 만들었다면 타이프라이터가 직접 때려서 작성한 가장 위의 1쪽 만이 원본이고 나머지는 부본(Copy) 또는 사본(Photocopy)이다.

셋째,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Photocopy)에 "ORIGINAL"이라는 마크를 스템프 등으로 찍고, 발행자가 서명을 하면 원본으로 간주된다.

넷째, 자동화 또는 전산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에 "ORIGINAL"이라는 마크를 스템프 등으로 찍고, 발행자가 서명을 하면 원본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카본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서류에 "ORIGINAL"이라는 마크를 스템프 등으로 찍고, 발행자가 서명을 하면 원본으로 간주된다.

한편 참고로 중국의 관행은 서류에 인감을 찍는 것이 관행이며 중동의 어느 나라는 손가락지문을 찍는 것이 관행이다. 신용장에서 어느 특정한 방법의 인증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한, 상기의 어느 방법이라도 수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인증의 방법은 각 국가 또는 발행지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유의 것들이므로 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 4.3.2 제시되어야 할 원본의 통수의 판단기준

첫째, "Shipping company's certificate is required"와 같이 신용장에서 서류의 부수를 언급하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1통의 원본(Original)만 제시하면 된다.

둘째, 만일 신용장에서 서류의 부수를 복수로 요구하는 경우 1통의 원본에 나머지는 부본(Copy)을 제시하면 된다.<sup>41)</sup> 예를 들어, Com-

39) Ian Walden, EDI and The Law, London, Blehein Online Ltd., 1989, p.33.

40) <http://www.bankcheck.co.kr/exc/exc4-2/e4-2-12.htm>

41) UCP 500 Article 20 (c) (ii).

mercial invoice in triplicate인 경우 원본 1통에 부본 2통을 제시하면 된다. Commercial invoice in three fold 또는 Commercial invoice in three copies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sup>42)</sup>

셋째, "Full set of ocean Bills of Lading..." 등과 같이 만일 특정한 수량의 부수를 언급하지 않고 전통(Full set)을 모두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각각의 원본서류에 원본의 부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수에서 1통이라도 누락시키면 안된다.<sup>43)</sup>

#### 4.3.3 부본과 사본의 판단기준

부본(Copy)이란 단 1장 또는 복수의 원본에 추가하여 필요한 용도에 따라 발행자가 부수적으로 발행하여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증명한 서류이다. 따라서 부본은 반드시 제3자가 아닌 그 서류의 발행권리를 갖고 있는 발행인이 발행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ORIGINAL"이란 마크가 없는 서류 또는 COPY"라는 마크가 찍힌 서류는 부본으로 간주되며 서명은 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사본(Photocopy)이란 원본 또는 부본을 복사기 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서 만든 서류이다. 따라서 사본은 그 서류의 발행권리를 갖고 있는 발행인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증명할 수 없다.<sup>44)</sup>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수의자가 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만든 서류는 Photocopy(사본)이지 Copy(부본)가 아니다. 수의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신용장

에서 "Copy of courier's receipt"라고 요구하는 경우, 수의자가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령증의 원본을 복사하여 다시 만든 서류는 원본의 사본, 즉 Photocopy이지 Copy가 아니므로 하자가 된다. 수의자가 이러한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Photocopy of courier's receipt라는 문언으로 요구하든지, 쿠리어회사에 별도의 부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원본의 사본(Photocopy)에 발행인인 쿠리어회사의 서명 등을 요구하여 찍는다면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증명하는 부본으로 간주된다. 또한 만일 신용장에서 "Photocopy of XYZ document"라고 요구하는데 카본지로 만든 서류 또는 전산장치로 작성한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가 된다. Photocopy란 "produced by reprographic system", 즉 복사기로 만든 서류이다.

### 4.4 UCP 500상 정보 및 전자매체에 의한 원본서류해석의 사례와 유의점

#### 4.4.1 "Original"의 표시가 없는 서류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사본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원본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Original 표시가 없는 서류의 사본이 원본서류로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전술과 같이 UCP 500에서는 제20조 b항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UCP 500에서는 원본서류로서 인정범위를 수기(Handwriting) 또는 타이핑뿐만 아니라 복사장치(Reprographic System), 자동화 또는 컴퓨터 장치(Automated or Computerized System) 또는 복사본(Carbon Copy)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유효한 원본서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사장치, 자동

42) <http://www.bankcheck.co.kr/exc/exc4-2/e4-2-12.htm>

43) UCP 500 Article 20 (c) (ii).

44) <http://www.bankcheck.co.kr/exc/exc4-2/e4-2-12.htm>

화 또는 컴퓨터 장치 또는 복사본 등으로 발행된 서류상에 반드시 서류발행자가 "Original"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수의자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서류를 팩스밀리로 송부받아 여기에 "Original"이라는 표시를 한 것은 원본서류로 볼 수 없다는 미국판례<sup>45)</sup>가 있다. 따라서 "Original"이라는 표시는 서류발행자 이외의 자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류발행자가 "Original"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 4.4.2 "Original"의 표시가 있고 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사된 것으로 간주되는 서류

UCP 500하에서 복사기기에 의해 복사된 서류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 원본으로서 수리되는 것과 사본으로서 수리되는 것이 있다. 즉, UCP 500의 규정에 따라 원본으로서 수리 가능한 것은 그 서류에 원본으로서의 표시가 있고 통상 서명이 필요하며, 사본으로서 수리되는 것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사본의 표시가 있는 서류나 원본으로서의 표시가 없는 서류는 그 어느 것도 사본으로서 수리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4.3 레이저 프린터에 의한 전자식서명의 유효성

신용장조건에 따른 선하증권상에 레이저 프린터에 의한 전자방식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를 ICC에 질의 해 온 예가 있다.

선하증권상에 레이저 프린터로 서명한 것이 합당한지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류를 발행한 국가의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가려져야 할

45) Western International Forest Products, Inc. vs Shinhan Bank, 1994.

문제이나<sup>46)</sup>, UCP 500 제20조 b항에는 "서류는 육필, 모사서명, 천공서명, 타인,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방식 또는 전자방식의 인증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47)</sup>

#### 4.4.4 원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진복사본의 제시

어느 신용장에는 물품에 관한 "T2 Circulation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후 매입은행은 이러한 유통허가증명서를 원본 대신에 사진복사본으로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은 이를 수리 거절하였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상에서 원본을 제시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를 달아 이 문제에 관한 ICC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온 예가 있다.<sup>48)</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위 분쟁의 경우와 같은 사진복사본 등의 기타방법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사진복사본이 제시되었더라도, 이에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와 함께 필요한 경우의 서명에 의하여 인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원본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4.4.5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는 조건의 총족여부

UCP 500 제20조 c항 ii호에서는 서류의 통수

46) 1978년에 제정된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Hamburg Rules)에서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선하증권상의 서명은 육필, 모사인쇄, 천공, 타인, 부호로 하거나 또는 기타의 기계적 또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또 1980년에 제정된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제5조)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47) ICC Publication 489, Case No.224.

48) ICC Publication 411, p. 41; ICC Publication 434, R 107; ICC Publication 489, Case No. 225.

로서 "in triplicate"된 경우에는 1통의 원본 및 나머지 사본에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7조 a항 iii호에 의해 상업송장은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단순히 "Commercial Invoice"로 하지 않고 "Signed Commercial Invoice"로 한 경우에는 서명된 송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이 없는 송장으로서는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제37조 a항 iii호에 대해서는 "Signed"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 종래 대로 서명필 송장은 원본 1통 및 나머지 2통의 사본으로 충족된다.<sup>49)</sup> 다만 실무상 서류에 실서명(manual signature)이 있으면 "Original"표시가 없어도 원본서류로 간주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서류에 실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Original"표시가 없으면 이는 단순한 사본으로 간주된다.<sup>50)</sup> 그러한 경우에 종전대로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로 하여도 3통 모두 서명필 송장이 송부되어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점에 대하여 신경이 쓰이는 고객(발행의뢰인)은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each signed"의 명시 문언처럼 각통 서명을 조건으로 하는 문언을 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 4.4.6 수통의 사본을 제시할 때 육필서명의 필요성

신용장에서는 여러 통의 서명된 송장의 사본(a signed invoice in several copies)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은행들은 그 중 1통만 육필 서명되고 나머지는 복사지로 서명된 복사본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49) 국가에 따라 수입통관할 때 원칙으로 수출자의 서명필 송장 2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3통 모두 서명필 송장의 원본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50) [http://www.fkreb.com/per\\_biz/exim/rbankex/check\\_2.htm](http://www.fkreb.com/per_biz/exim/rbankex/check_2.htm)

다른 은행들은 모든 사본에 육필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해석 인지를 ICC에 질의 해 온 예가 있다.<sup>51)</sup>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통에만 육필 서명되면 된다는 의견과 전통의 사본에 육필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신용장통일 규칙 제 20 조 c항에는 은행은 "사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원본이란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은 서류는 이를 모두 사본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본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사본에 육필서명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행에 의해 신용장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수리되는 기본요건과 원본이 아닌 사본거래의 문제점을 토대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원본과 사본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례와 해석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통해 악용되어 발생하는 신용장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은행이 "사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하며 원본과의 구별 및 권리·소유에 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51) ICC Publication 459, Case No.69.

서 은행으로부터 원본서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서류에 'ORIGINAL'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둘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where necessary) 서류발행자 등의 서명(signature)이 있어야 한다. 사본에 ORIGINAL표시 없이 서명만 했다고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와 둘째가 갖추어 졌다면 서류가 육필이나 타이프뿐만이 아니고 복사기, 컴퓨터, 카본페이퍼 등으로 작성되어도 상관이 없으며 또 서명도 어떠한 기계식, 전자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 조항은 반드시 모든 서류의 원본서류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조문원문이 "banks will also accept"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복사서류와 같은 서류라도 원본이나 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에 대해서까지도 항상 원본의 표시가 없으면 원본서류로서 수리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보아야 한다.

또한 신용장에서 'signed commercial invoice duplicate'와 같이 원본 1통에 부본 1통, triplicate를 요구했다면 원본 1통 부본 2통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류자체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는 등의 별도 명시가 없어야 한다. 즉, 서류 자체에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된 원본의 전통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은 원본이 한통 발행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운송서류나 보험서류는 원본이 한 통 넘게 발행되는 권리증권으로서 서류에 원본의 통수가 명기되므로, 전통(full set)을 제시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에 인증된, 합법화된, 확인된(등) 서류를 요구한다면 문면상 이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서

명 등이 있으면 된다.

## 참고문헌

- 南豐祐, 貿易決濟論, 圖書出版 斗南, 2000.  
 南豐祐·韓祥鉉, 信用狀方式의 國際商品去來에서  
 詐欺豫防策, 商品學研究, 第19號, 1998, 12.  
 東京銀行システム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  
 社, 1996.  
 桐谷芳和, 四頂 貿易取引と信用狀, 經濟法令研究  
 會, 1994.  
 桐谷芳和, 1993年改訂版 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  
 舊規則との比較つき～, 經濟法令研究會,  
 1994.  
 朴大偉, 船積書類寫本에 의한 信用狀去來의 問  
 題點,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1999.  
 日本貿易關聯手續簡素化協會, 署名以外の方法に  
 よる貿易書類の認證-貿易手續の簡素化, 書  
 式コード等の標準化のための國聯勸告集,  
 1988.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主要貿易書類の署  
 名の考察, JASTPRO, 81-13, 1982.  
 朝岡良平 編著, 實務家のために逐條解説 信用狀  
 統一規則, 社團法人 金融再訂事情研究會,  
 1985.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No.2, 1990.  
 Charles del Busto, The New Standard Docu-  
 mentary Credit Forms for the UCP 500,  
 ICC, Publishing S.A. Paris, 1993.

Ian Walden, EDI and The Law, London,  
Blehein Online Ltd., 1989.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Publishing  
S.A., 1989.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1985, Paris.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UCP 500  
Problems in China Trade, 1996, 6.

James E. Byem, The Original documents  
controversy : from Glencore to the ICC  
decis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and George Mason  
University, 1999.

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f the res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Vol.101. 1997.

<http://www.bankcheck.co.kr/exc/exc4-2/e4-2-12.htm>

##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L/C Transactions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Sang-Hyun Han\*

### Abstract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queries raised with the ICC Banking Commission as to the determination, by banks, of what is an "original" docu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nd the necessity, if any, for such a document to be so marked.

So, the ICC Banking Commission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 was sent to members in July. This Decision emphasizes the need to correctly interpret and apply sub-Article 20(b) of UCP 500.

Consequently, about Hand signed documents, Facsimile signed documents, Photocopies and Telefaxed presentation of documents, Banks examine documents presented under a letter of credit to determine, among other things, whether on their face they appear to be original. Banks treat as original any document bearing an apparently original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f the issuer of the document, unless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that it is not original. Accordingly, unless a document indicates otherwise, it is treated as original if it : appears to be written, typed, perforated, or stamped by the document issuer's hand; or appears to be on the document issuers original stationery; or states that it is original, unless the statement appears not to apply to the document presented (e.g. because it appears to be a photocopy of another document and the statement of originality appears to apply to that other document).

---

\* Lecturer Dept. of Economics and Commerce, Kang-Nam University.